

##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501호

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을 개정하는데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#### 1. 개정 이유

현행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는 각 지자체가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정보 접근성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음. 이에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심의 주요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

#### 2. 주요 내용

- 가. 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)을 통하여 심의 주요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개선
- 나. 별지 제2호서식에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의 근거와 작성방법을 명시
- 다. 기타 오자 및 의미가 불분명한 표현을 바로잡고자 함.

#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: 건축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→ “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행정예고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# 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

및 전화번호

○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정안	수정안	의견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6동 418호  
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
- 전화(☎) 044-201-4082, 3763 / 팩스 044-201-5574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(전화 044-201-376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